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 - 210
----------	---------

제출연월일 : 2000. 5.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을 위한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감사청구시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를 600명이상으로 정함
(안 제2조)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600명이상 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